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
------	-----

제출년월일 : 2002. 11. 28.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방단의 조직(안 제4조)

나. 단장(안 제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입법예고 : 결과 의견 없음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리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를 “통·리민방위대장이 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를 “단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4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u>본인의 동의를 얻어</u>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3.(생략)</p> <p>②(생략)</p> <p>제5조(단장) ①단장은 <u>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u> 군수가 임명한다.</p> <p>②단장은 <u>군수의 명을 받아</u>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p>	<p>제4조(조직) ①----- -----<u>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리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한다.</u></p> <p>1.~3.(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5조(단장) ①-----<u>통.리민방위대장이 된다.</u></p> <p>②<u>단장은</u>----- -----.</p>